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#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강태원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

- 행정재산·보존재산 → 행정재산
- 잡종재산 → 일반재산

### 나.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(안 제4조)

-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→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
- 공유재산심의회 구성

- 위 원 장 : 총괄재산관리관(행정국장)
- 부위원장 : 회계과장
- 위 원 : 도지사가 임명하는 본청과장 7명

다. 대부요율을 10/1000 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 완화(안 제28조제4항제6호)

-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, 50명 이상→30명 이상
-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, 50% 이상→30% 이상

라.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 (안 제32조제3항 신설)

-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30 감면

마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(안 제5조제2항제2호, 안 제28조제4항제5호)

-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 →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
- 영 제29조제1항제14호 → 영 제29조제1항제13호

#### 4. 검토결과

강태원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

조정 둘째,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 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직접 심의 셋째, 대부요율을 10/1000 이상 기준의 완화 넷째,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 다섯째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정비와 상충함으로 좀 더 신중한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붙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